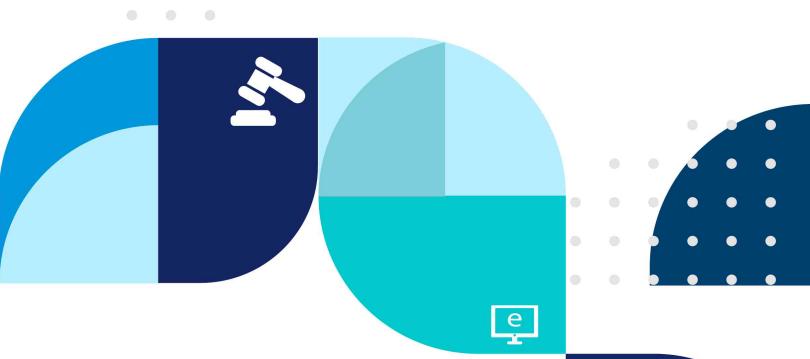
#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Vol. 195 | December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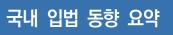




## Contents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2023. 12. 26. 공포)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2023. 12. 29. 공포)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인(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제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인의원대표발의, 2023. 12.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인(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제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 2023. 12. 1. 제안)
해외 입법 동향
〈영국〉
• 영국 상원, 「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의(2023. 11. 22.)
〈미국〉
• 미국 법무부,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지연결정 지침」 발표(2023. 12. 12.) 12.
〈해외 단신〉
• 유럽연합(EU), 「AI법(안)」 및 「사이버복원력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 ·································· 1년



## ■ 공포된 법령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2. 26.	<ul> <li>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제도에 관한 문제 제기</li> <li>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li> </ul>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2023. 12. 29.	<ul> <li>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 시 취약점 분석·평가, 핵심 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부과</li> <li>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요청이 가능</li> </ul>

## ■ 국회 제출 법률안

법안명	대표발의 (날짜)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2023. 12. 12.)	<ul> <li>침해사고 신고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규정</li> <li>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 점검 및 보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2023. 12. 20.)	<ul> <li>중소·벤처 기업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대로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li> <li>정부가 중소기업 등에게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근거 마련</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2023. 12. 22.)	<ul><l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li><li>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li></ul>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2023. 12. 29.)	<ul> <li>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들을 신고제로 단일화</li> <li>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를 쉽게 표시·통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li> </ul>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2023. 12. 1.)	<ul> <li>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의 필요성 제기</li> <li>당사자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등 카메라나 통신기기 등을 조작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li> </ul>

국내 입법 동향 :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3. 12. 26., 시행, 2023. 12. 26.)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성격, 자산총액 대비 인력 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목적을 가짐
- 현재 겸직금지 대상인 직전 시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Reference



#### 국내 입법 동향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3. 12. 29., 시행, 2024. 1. 1.)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 Referenc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제안이유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스마트물류·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및 제35조제2항 등)
- ○개인·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융합(안 제2조 등)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안 제5조, 제7조 등)
-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표시·통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6조제2항 등)
-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수탁자로 지위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정 중 수탁자에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등)

#### • Referenc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기업 정보 유출, 웹변조,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비롯하여 침해사고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48조의3, 제76조)
-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4, 제76조)

-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 신속한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의 원인조사, 대책마련, 조치 이행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 Referenc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2023. 12.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중소 · 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4.5%에 달하여 정보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 · 벤처 기업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도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 Reference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제76조)

#### Reference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행위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의2 신설)

#### Reference



#### 해외 입법 동향

## 영국 상원, 「인공지능 (규제) 법안」 발의(2023. 11. 22.)

영국 상원의원은 AI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AI를 개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AI 책임관을 도입하 도록 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 을 발의 (2023. 11. 22.)

#### ■ 개요

- (「인공지능 (규제) 법안」1)) 영국 상원의원은 AI의 안전한 활용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규제기관과 AI 규제 샌드박스 구축, AI 책임관 도입을 요구하는 「인공지능(규제) 법안」을 발의
- 동 법안은 9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AI 규제 원칙을 고려한 AI 규제기관 도입, AI 개발, 배포 또는 사용 기업에 AI 책임관 도입, 지식재산2) 기록 제출 의무와 라벨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목차

- · 1. Al 규제기관
- · 2. 규제 원칙
- · 3. 규제 샌드박스
- · 4. Al 책임관
- · 5. 투명성, 지식재산 의무와 라벨링
- 6. 대중 참여
- · 7. 해석
- · 8. 규제
- · 9. 범위, 개시와 축약된 제명

#### ■ 주요내용

○ (인공지능의 정의)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또는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을 인식하고 ▲인지 능력에 근접하게 설계된 자동화된 처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측 또는 결정을 내리는 기술이며 ▲생성형 인공지능, 즉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와 기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포함함

<sup>1)</sup> Artificial Intellignece (Regulation) Bill [HL]

<sup>2)</sup> Intellectual Property

해외 입법 동향 : 영국

○ (AI 규제기관) 국무장관은 AI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 AI 규제기관의 기능

- · (a) 관련 단속 기관들이 AI를 고려하도록 보장
- · (b) AI 관련 규제기관 간의 접근 방식 조정
- · (c) AI 관련 규제 책임들 간의 갭 분석 수행
- · (d) 제품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관련 법률 검토
- · (e) 전반적인 규제 체계의 효율성 모니터링
- · (f) AI로 발생하는 경제 전반의 위험 모니터링
- · (g) 새로운 AI 기술 동향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알리기 위해 환경 탐색<sup>3)</sup> 수행
- · (h) AI 혁신가가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샌드박스 지원
- · (i) 독립적인 AI 감사자(Auditor)를 승인
- · (i) 비즈니스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개인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 (k)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상호 운용성 촉진
- (규제 원칙) AI 규제, AI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 AI 프로그램은 다음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 AI 규제는 ▲안전성, 보안 및 견고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과 거버넌스 ▲경쟁 가능성과 시정을 고려해야 함
- Al를 개발, 배포,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Al에 대한 투명한 설명 ▲철저하고 투명한 테스트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준수를 보장해야 함
- AI와 그 응용 프로그램은 ▲평등법<sup>4)</sup> 준수 ▲설계상 포용성 ▲개인 간 차별과 입력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지속하지 않는 설계 ▲경제적 하위 계층,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사항 충족 ▲검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상호운용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생성을 보장해야 함
- (규제 샌드박스) AI 규제 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하도록 함

#### 규제 샌드박스 의미

- · (a) 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제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
- · (b) 허가받은 회사, 허가가 필요한 회사,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영국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와 연관됨
- · (c) 기업이 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d) 테스트가 명확한 목적을 갖고 소규모로 수행되도록 요구함
- · (e) 제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기업이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함
- (AI 책임관 도입) AI를 개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AI 기술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편견 없이 보장되도록 AI 책임관을 지정하게 함

<sup>3)</sup> Horizon-scanning, 신흥 기술 또는 산업 동향에 대해 예측하는 연구

<sup>4)</sup> Equalities legislation, 2010년 영국에서 차별 철폐를 위해 개별법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제정된 법률

- \*
- 2006년 개정된 회사법 제414C(7)(b)조의 (iii)항 뒤에 "(iv) 회사의 AI 개발, 배포 또는 사용, 그리고 인공지능(규제)법 2024에 따라 지정된 AI 담당자의 이름 및 활동" 삽입을 요구함
- (지식 재산 기록 제출 의무와 라벨링) 본 법안은 ▲AI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훈련 중에 사용된 제3자 데이터와 지식재산 기록을 AI 규제기관에 제공 ▲AI 규제기관이 사전 동의 하에 모든 지식재산 및 저작권 의무 준수 여부 확인 ▲AI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고객에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건강 경고<sup>5)</sup>, 라벨링 및 사전 동의를 제공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AI 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은 독립적인 제3자가 AI를 개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기업의 절차를 점검하도록 함

#### ■ 전망 및 시사점

- ○「인공지능 (규제) 법안」은 국무장관<sup>6)</sup>으로 하여금 AI 규제 원칙을 고려한 AI 규제기관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AI 개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AI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AI 규제 원칙은 2021년 11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규제의 미래에 관한 백서<sup>7)</sup>의 핵심 원칙<sup>8)</sup>과 유사함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 AI 책임관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주요 상업 규정 중 하나인 회사법 2006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AI 규제와 관련하여 영국 기업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법안은 영국 상원의 개인 의원이 발의하여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sup>9)</sup> AI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음

#### Reference

https://bills.parliament.uk/bills/3519

https://www.technologyslegaledge.com/2023/03/a-pro-innovation-approach-uk-government-publishes-white-paper-on-the-future-of-governance-and-regulation-of-artificial-intelligenc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a5c3da8-aacc-4b0e-8076-a31f3b73d549

https://www.dataprotectionreport.com/2023/11/artificial-intelligence-regulation-bill-uk-private-members-bill-und erscores-wide-spread-regulatory-concerns/

<sup>5)</sup> Health warnings, AI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건강 경고 표시를 의미함

<sup>6)</sup> Secretary of State

<sup>7)</sup>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p>8) ▲</sup>안전성, 보안 및 견고성 ▲적정한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 및 거버넌스 ▲경쟁 가능성 및 시정

<sup>9)</sup>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a5c3da8-aacc-4b0e-8076-a31f3b73d549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법무부,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지연결정 지침」 발표(2023. 12. 12.)

미국 법무부(DOJ<sup>1)</sup>)는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sup>2)</sup>)의 규칙이 발효되기 전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를 지연하기 위한 요청 절차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함 (2023. 12. 12.)

#### ■ 개요

- 지난 7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사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전략, 거버넌스 및 사고 공개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여 12월 18일 자로 발효되었으며 상장사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규칙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공개될 시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연을 요청할 경우 공개를 지연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상장사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전략, 거버넌스 및 사고 공개에 관한 규칙,3)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 (공개 시기) 기업은 사이버보안 사고의 발생을 인지할 시 지체없이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결정 후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해당 사고를 공개해야 함		
공개 공개	• (예외 사항) 미국 법무부(DOJ)장관이 해당 사고가 즉시 공개될 시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때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공개지연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및	• 기업은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위협에 따른 중대한 위험		
전략 공개	평가, 식별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		
거버넌스 공개	• 이사회에게 사이버보안 위협에 따른 위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위험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식별하며 프로세스와 중대한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을 설명해야 함		

○이에 미국 법무부는 지난 12월 12일,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의 발효 전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를 지연할 수 있는 예외사항<sup>4)</sup>과 관련한「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지연결정 지침<sup>5)</sup>」을 발표함

<sup>1)</sup> Department of Justice

<sup>2)</sup>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up>3)</sup> Cybersecurity Risk Management, Strategy, Governance, and Incident Disclosure Final Rule, 세부 내용은 [2023년 8월]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1호 참고

<sup>4)</sup> SEC Form 8-K Item 1.05(a)

<sup>5)</sup> Department Of Justice Material Cybersecurity Incident Delay Determinations Guidelines



#### ■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지연결정 지침」 주요 내용

- o (개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가 공개될 시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지연요청을 통지하면 기업은 일정 기간동안 공개를 지연할 수 있음
- ①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를 연기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 초래)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보안 사고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공개가 더 많은 사고를 유발 ▲기업이 운영·유지하는 시스템에 민감정보가 포함 ▲기업이 중요한 인프라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개가 그 개선 작업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개 지연을 허용함
- ②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한 절차 및 의무
  - (기업의 의무) 기업은 사이버보안 사고를 발견하고 해당 공개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또는 다른 미국 정부기관<sup>(6)</sup>을 통해 FBI에 즉시 연락해야 함
  -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사이버보안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기업의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규정을 발동해야 함
  - 기업은 사고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한 정보를 FBI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 정부기관의 의무) 어떠한 미국 정부기관이든지 기업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사고를 알게 되고 해당 사실들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FBI 및 적절한 다른 미국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공개가 필요한 시기와 내용을 결정해야 함
  - 만약 관련 미국 정부기관이 공개 지연이 정당하고 기업이 동의한다면, 해당 미국 정부기관은 즉시 FBI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지연의 적절성을 설명하며 지연 기간을 제안해야 함
- ③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관련 예외 적용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 (법무부 결정에 따른 절차) 법무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여 공개 지연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연 기간을 결정하는 독점적인 재량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미국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 법무부가 재량적으로 공개 지연의 표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이 법무부

<sup>6)</sup> 비밀경호국(USS),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CISA), 부문별 위험 관리 기관(SRMA)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즉시 법무부에 통보하고 추가정보나 지원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지연 기간) 본 규칙의 예외사항에서는 기간과 관련하여 ▲최대 30일의 초기 지연 ▲최대 30일의 추가 기간 ▲최대 60일의 최종 추가 지연기간 및 ▲60일 이후의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을 언급함
- 법무부 장관은 공개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서면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면 최대 30일의 추가 기간동안 공개를 지연할 수 있음
- 법무부 장관은 비상 상황 시 공개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하고 이러한 서면을 증권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면 최대 60일의 최종 추가 기간동안 공개를 지연할 수 있음
- 최종 60일 지연 이후로 법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지연이 필요하다고 표시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추가 지연을 위한 요청을 고려하고 위원회 면제 명령<sup>7)</sup>을 통해 지연 기간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 ■ 전망 및 시사점

-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과 관련한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지연결정 지침」은 기업들이 미국 법무부의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 연기요청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미국 법무부는 기업이 사이버보안 사고를 분석하기 이전에 FBI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하고, 기업은 FBI와 연락 창구를 구축 및 유지하고 사고의 중대성 결정을 내리기 전에 FBI에 사건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
- 그러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 공개에 대한 지연결정을 고려하므로 기업의 사고 공개 지연요청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됨

#### • Reference

https://www.justice.gov/media/1328226/dl?inline (원문)

https://www.wiley.law/alert-Cyber-Incident-Reporting-Guidance-DOJ-Explains-How-It-Will-Determine-if-a-Public-Disclosure-Poses-Substantial-National-Security-or-Public-Safety-Risk (관련 기사)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us/knowledge/publications/6670e72d/department-of-justice-material-cy bersecurity-incident-delay-determination-guidelines (관련 기사)

<sup>7)</sup> 지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면제 명령 없이 총 120일(또는 공공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 단신

#### 유럽연합(EU), 「AI법(안)」및「사이버복원력법(안)」도입에 대한 합의

- **(AI법(안))** EU 의회,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는 지난 12월 8일에 「AI법(안)<sup>8)</sup>」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다음 회의에서 합의안 투표를 통한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본 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 발효되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이르면 2026년에 전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동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AI를 활용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고,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여 이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임
- ※ [2023년 6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9호 참고
- (사이버 복원력법(안)) EU 의회.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는 지난 12월 3일에 「사이버 복원력법(안)의」에 대하여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합의안 투표를 통한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동 법안의 공동 입법자들은 기존에 EU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보안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등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합의함
- 한편, 공동 입법자들은 "법이 발효되고 3년 후에 적용되도록 하여 제조업체가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 [2022년 9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80호 참고

#### Referenc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206IPR15699/artificial-intelligence-act-deal-oncomprehensive-rules-for-trustworthy-ai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106IPR09007/cyber-resilience-act-agreementwith-council-to-boost-digital-products-securit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 23 616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1/30/cyber-resilience-act-council-and-parl iament-strike-a-deal-on-security-requirements-for-digital-products/

<sup>8)</sup>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sup>9)</sup>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orizontal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Cyber Resilience Act)

####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Vol. 195 (December 2023)



l 발 행 처 l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433-25

I 기획·편집 I 법제연구팀

Ⅰ 발간·배포 Ⅰ www.kisa.or.kr

-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